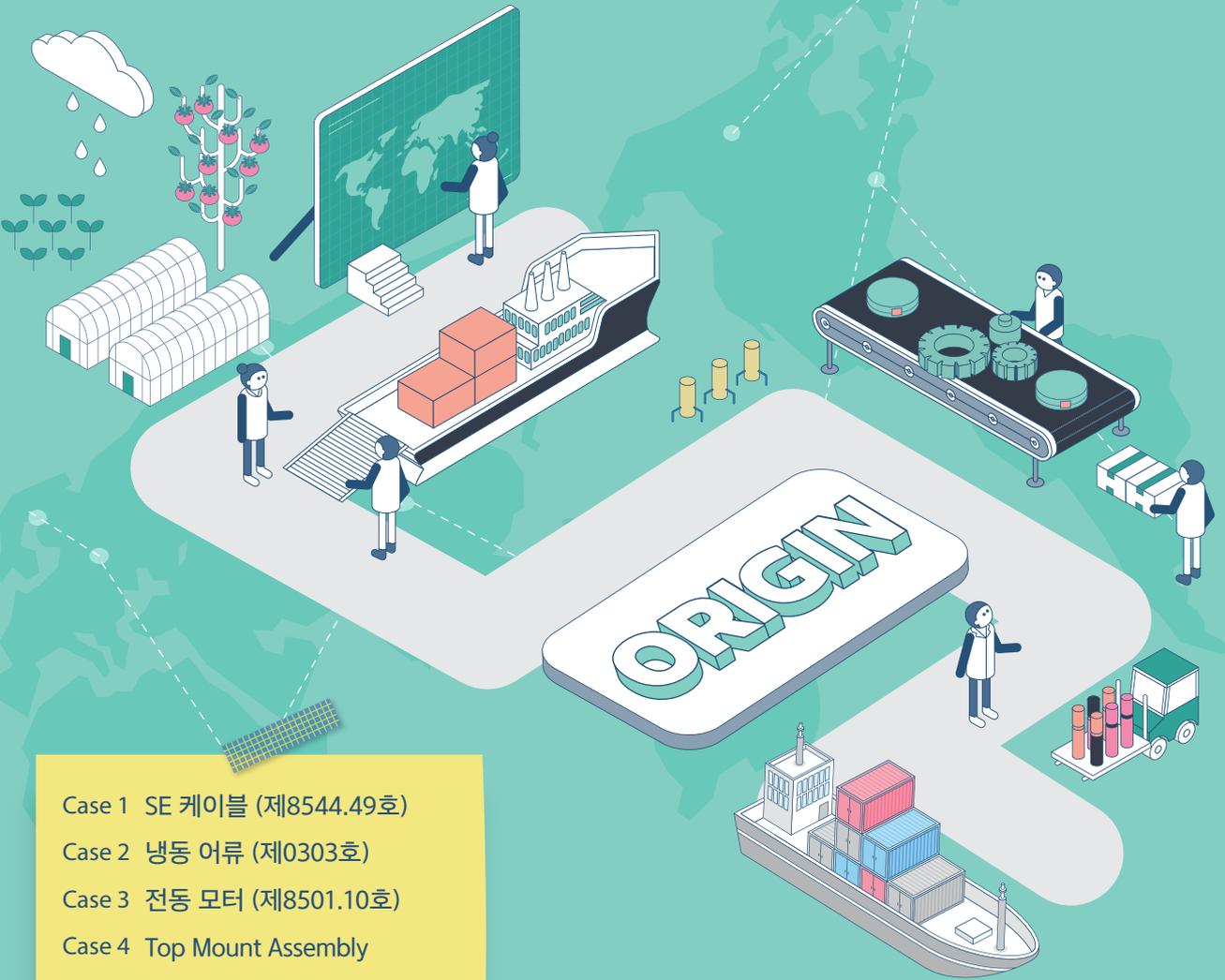


# ORIGIN CASE

Vol. 1



Case 1 SE 케이블 (제8544.49호)

Case 2 냉동 어류 (제0303호)

Case 3 전동 모터 (제8501.10호)

Case 4 Top Mount Assembly

Case 5 스프레이 용기 (제8424.89호)

Case 6 파이프 렌치



한국원산지정보원

# CONTENTS

Case 1.	SE 케이블 (제8544.49호)	1
Case 2.	냉동 어류 (제0303호)	6
Case 3.	전동 모터 (제8501.10호)	11
Case 4.	Top Mount Assembly	17
Case 5.	스프레이 용기 (제8424.89호)	21
Case 6.	파이프 렌치	26



case  
1

## SE 케이블 (제8544.49호)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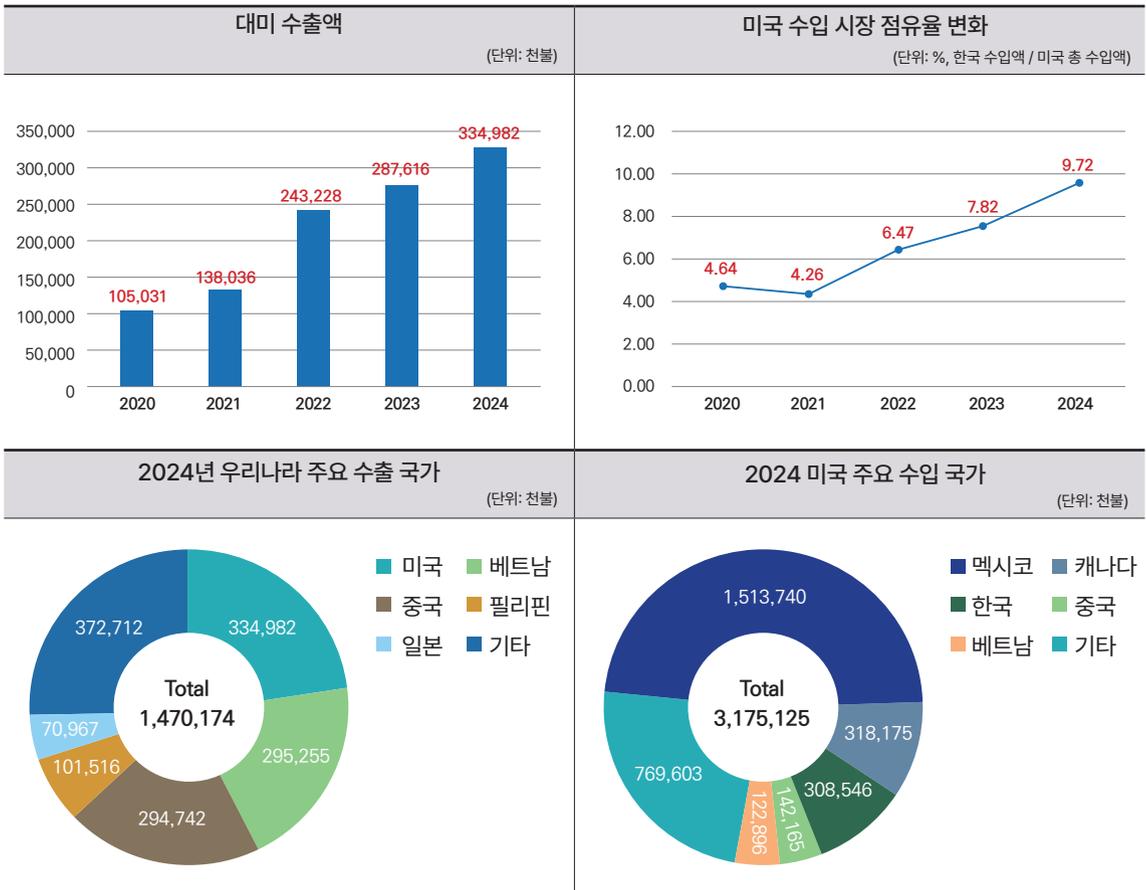
사례명	<b>SE 케이블</b> 한-미 FTA 적용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29104 (2024.03.28.)
사실관계	원재료인 중국산 알루미늄 로드/와이어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복합 공정 수행 후 완성된 SE 케이블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한-미 FTA 적용 여부 중국산 알루미늄 로드/와이어의 HS Code(제7604.29호)가 완제품의 HS Code (제8544.49호)와 4단위 수준에서 상이하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p> <p>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드로잉(Drawing), 스트랜딩(stranding), 캡슐화(encapsulating) 등 여러 공정이 결합된 한국에서의 복합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정하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근거법령	- HTSUS(19 U.S.C. § 1202) General Note(GN) 33(o)/chapter 85/9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544.4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 5.3%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제8544.4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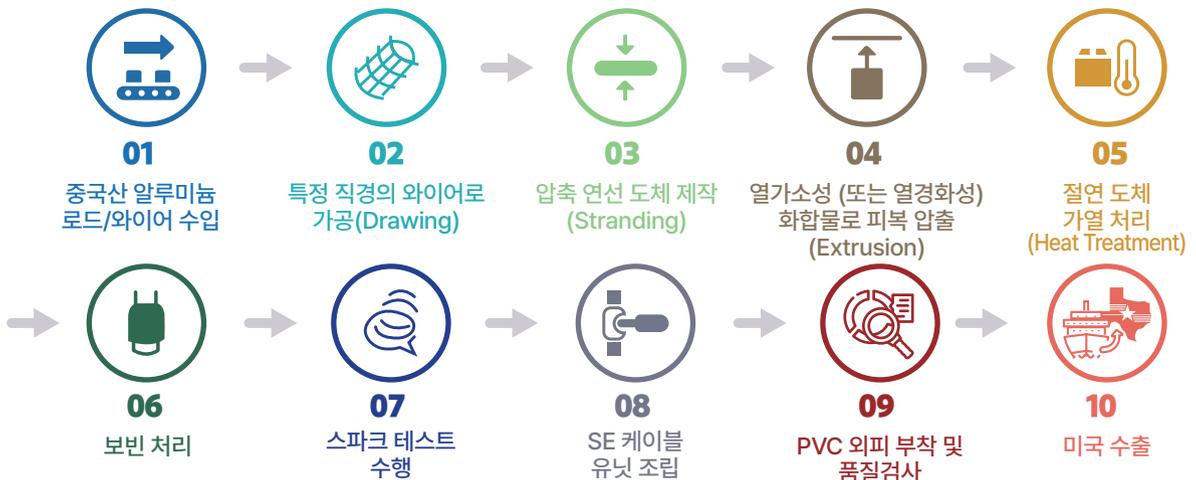
**사 례 명** [SE 케이블] 한-미 FTA 적용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29104 (2024.03.28.)

**사실관계**

<b>요청자</b>	Imperium Cables LLC	
<b>제품</b>	<b>제품명</b>	• SE 케이블 (Service Entry Cables)
	<b>구성</b>	• AA-800 시리즈 알루미늄 로드/와이어(중국산) • 폴리에틸렌 절연층 등 기타 원재료(한국산)
	<b>용도</b>	• 전력 공급용 케이블
	<b>원재료 HS Code</b>	• 알루미늄 로드/와이어(제7604.29호)
	<b>완제품 HS Code</b>	• SE 케이블(제8544.49호)

**제조과정**



**상세과정**

1. 중국산 알루미늄 로드/와이어를 한국으로 수입
2. 알루미늄 로드를 가공하여 특정 직경의 와이어로 가공 (Drawing)
3. 와이어를 꼬아 압축 연선 도체 제작 (Stranding)
4. 가교 폴리에틸렌 등 열가소성(또는 열경화성) 화합물로 피복 압출 (Extrusion)
5. 절연 도체를 가열 처리 (Heat Treatment)
6. 조립을 위해 가공 보빈 처리
7. 절연 코어에 스파크 테스트 수행
8. 여러 개의 절연 코어를 꼬아 하나의 SE 케이블 유닛으로 조립
9. PVC 외피를 입혀 최종 SE 케이블 완성
10. 품질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제8544.4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85/92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30호 내지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30호 내지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직접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판정 결과

- ☐ SE 케이블(제8544.49호) 생산을 위해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는 중국산 알루미늄 로드/와이어 1개로, 해당 원재료의 HS Code(제7604.29호)가 완제품의 HS Code(제8544.49호)와 4단위 수준에서 상이하므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

2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USTR<sup>1)</sup>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 부품이 원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 부분이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단순한 와이어 드로잉(Drawing) 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참고 판례: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IT 1987), *aff'd*, 867 F.2d 1409 (Fed. Cir. 1989)

**사례** 스페인산 와이어 로드(코일 형태)가 캐나다로 선적된 후 드로잉(Drawing) 공정을 거쳐 와이어로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입

**판결** 와이어 로드와 와이어를 제조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거의 없으며, 이미 와이어 로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구성이 변화하여 최종 제품의 성질 및 용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1) USTR: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관련 판정 및 분석

- 다만, CBP는 개별적인 드로잉(Drawing), 스트랜딩(stranding), 캡슐화(encapsulating)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러한 여러 공정이 결합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을 결정한 바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6301* 및 *HQ 562581*

### 판정 결과

☑ 한국에서의 공정은 드로잉, 스트랜딩, 조립, PVC 코팅 등 여러 공정이 결합된 복합 공정으로, 최종 SE 케이블은 관련 산업 표준과 사양을 충족하여 상업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전력 공급용 전선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결론

- ✓ 한-미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미국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이 가능함
- ✓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므로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제301조 무역제재가 적용되지 않음

## III 시사점

- 케이블 등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할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을 고도화 하여 여러 공정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존 CBP 사례 탐색 및 적극적인 사전판정 제도 활용이 요구됨

## IV 참고자료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CBP Ruling HQ 556301 (1992.05.04.), <https://rulings.cbp.gov/ruling/556301>
- CBP Ruling HQ 562581 (2003.02.13.), <https://rulings.cbp.gov/ruling/562581>
- CBP Ruling HQ H329104 (2024. 03.28.), <https://rulings.cbp.gov/ruling/H329104>
-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85/92(A), <https://hts.usitc.gov/>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uperior Wire v. United States*, 669 F. Supp. 472 (CIT 1987), *aff'd*, 867 F.2d 1409 (Fed. Cir. 1989),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70325/superior-wire-a-div-of-superior-products-co-v-united-states/?q=Superior+Wire+v.+United+States>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_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_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case  
2

## 냉동 어류 (제0303호)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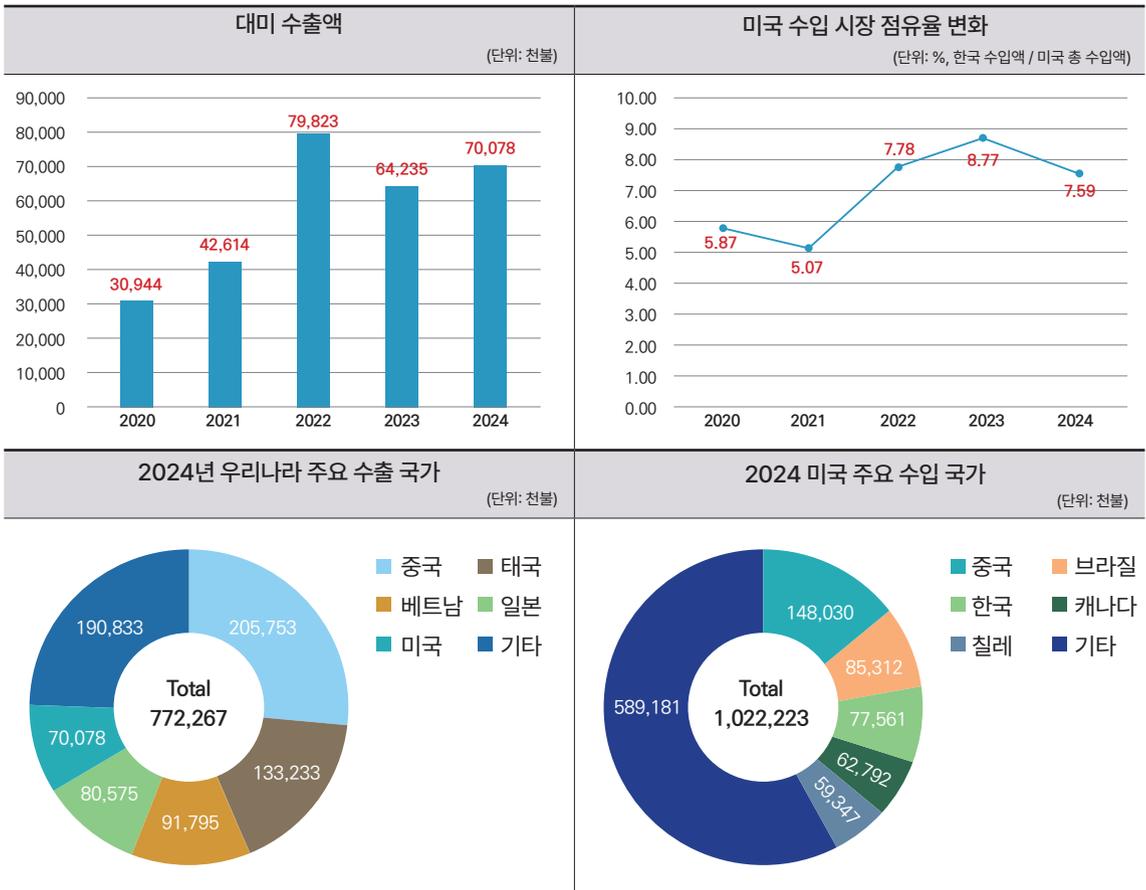
사례명	<b>냉동 어류</b>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31430 (2023.09.27.)
사실관계	캐나다 국적 어선에 의해 캐나다 알래스카만에서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중국 FTZ으로 수출한 후, 5가지 제품(A,B,C,D,E)으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제품 A,B,C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캐나다산으로 판정하며, 제품 D,E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국산으로 판정</p> <p>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중국산으로 판정된 제품 D,E는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li><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li>-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li></ul>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0303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10%
	미국 기본세율	0% or 15% or 1.1¢/kg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b>[참고]</b> 제3류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제0303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냉동 어류]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31430 (2023.09.27)

**사실관계**

<b>요청자</b>	West Sea Family Fishery Group Co.	
<b>제품</b>	제품명	• 제품 A, B, C, D, E
	구성	• Pacific Ocean Perch (Sebastes Alutus)(캐나다산) • Black Cod (Anoplopoma Fimbria)(캐나다산) • Pacific Cod (Gadus Macrocephalus)(캐나다산)
	원재료 HS Code	• 냉동 어류(제0303호)
	완제품 HS Code	• 제품 A, B, C(제0303.89호) • 제품 D, E(제0304.95호)

**제조과정**



**상세과정**

1. 캐나다 알래스카만(Gulf of Alaska)에서 캐나다 국적 어선에 의해 포획
2. 캐나다에서 냉동 처리
3. 중국 자유무역지대(FTZ)로 운송
4. 냉동 어류를 다음과 같은 5가지 제품으로 가공

제품	가공 공정
A	비늘, 아가미 및 내장 제거
B	비늘, 아가미 및 내장 제거 후 생선을 펼치는 작업 수행(뼈와 눈은 그대로 유지)
C	비늘, 아가미, 내장 및 머리 제거
D	필레(fillet) 조각으로 절단
E	다르네(darne) 형태로 절단

5. 각 제품을 다음의 방식으로 포장

제품	포장 방식
A,B,C	진공 포장된 플라스틱 백에 포장
D,E	소매용 종이 상자에 포장

6.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❶ 어류가 필레(fillet)로 가공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물고기의 본래 형태(essential shape)를 상실한 별개의 상업적 제품(discrete commercial good)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 참고 판례: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701 F. Supp. 229, 232 (Ct. Int'l Trade 1988)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20603, NY N284246 및 HQ H311331*

❷ 어류의 단순 가공(해동, 내장 제거, 비늘 제거, 냉동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4050 및 NY R04129*

## 제품 A,B,C 판정 결과

☐ 내장, 비늘, 머리 제거 등의 공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제품이 여전히 물고기의 본래 형태(essential shape)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공정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name)이나 성질(character)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

## 제품 D,E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이 필레(fillet) 및 다르네(darne) 형태로 절단된 경우, 물고기 본래 형태(essential shape)와는 다른 별개의 상업적 제품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2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판정 결과

☐ 제품 D, E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여 중국산으로 판정하며, 해당 물품은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 A,B,C는 캐나다산으로 표시하며, 변형이 발생한 제품 D,E는 중국산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임

### Ⅲ 시사점

- 포획 후 그대로 냉동한 어류를 가공한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물고기 본래 형태(essential shape)와는 다른 별개의 상업적 제품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1331 (2020.12.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331>
- CBP Ruling HQ H331430 (2023.09.27.), <https://rulings.cbp.gov/ruling/H331430>
- CBP Ruling NY N284246 (2017.04.06.), <https://rulings.cbp.gov/ruling/N284246>
- CBP Ruling NY N304050 (2019.05.28.), <https://rulings.cbp.gov/ruling/N304050>
- CBP Ruling NY N320603 (2021.08.16.), <https://rulings.cbp.gov/ruling/N320603>
- CBP Ruling NY R04129 (2006.06.15.), <https://rulings.cbp.gov/ruling/R0412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Koru North America v. United States, 701 F. Supp. 229, 232 (Ct. Int'l Trade 198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474459/koru-north-america-v-united-states/?q=Koru+North+America+v.+United+States>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19+USC+1304&f=treesort&fq=true&num=47&hl=true&edition=prelim&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

case  
3

## 전동 모터 (제8501.10호)

### 요약

사례명	<b>전동 모터</b> NAFTA 물품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01619 (2018.11.06.)
사실관계	멕시코에서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된 전동 모터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제8503호)와 완제품의 HS Code(제8501호)가 4단위 수준에서 상이하므로 멕시코산으로 판정</p> <p>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멕시코에서 행해진 조립 공정은 3개의 하위 어셈블리(중국산)를 단순 조립(simple assembly)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국산으로 판정(제301조 무역제재 대상)</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9 C.F.R. § 10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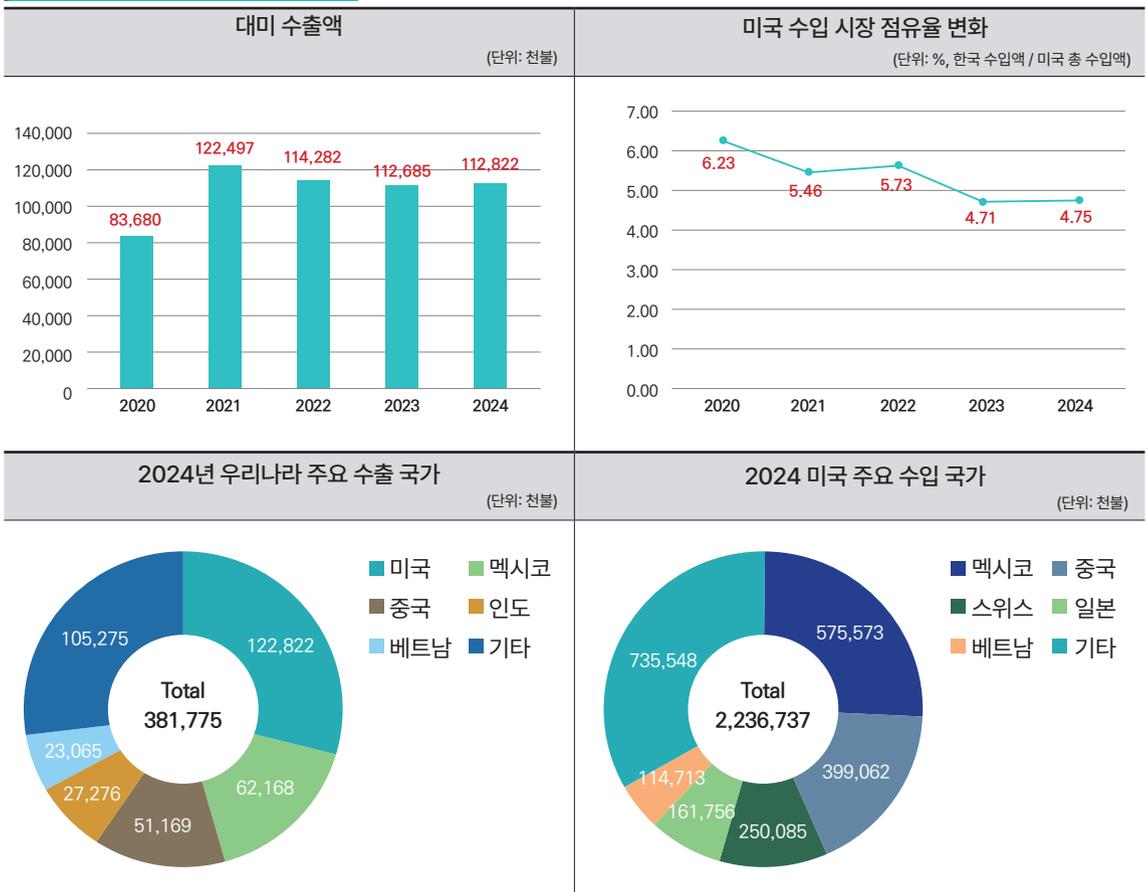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501.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2.8 ~ 6.7%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503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시장정보

제8501.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전동 모터] NAFTA 물품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HQ H301619 (2018.11.06.)

**사실관계**

<b>요청자</b>	Johnson Electric	
<b>제품</b>	제품명	• 직류(DC) 전동 모터(1999-1020656EP)
	구성	• 스테이터(Stator) 또는 후면 하우징 (중국산) • 로터(Roter)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 (중국산) • 엔드캡 어셈블리(End Cap Assembly) (중국산)
	용도	• 전자식 도어록 작동을 위한 전동 모터
	원재료 HS Code	• 개별 부품(제8503호)
	완제품 HS Code	• 전동 모터(제8501.10호)

### 제조과정



- 상세과정**
1. 중국산 스테이터 또는 후면 하우징(stator or rear housing), 로터 또는 아마추어 어셈블리(rotor or armature assembly), 엔드 캡 어셈블리(end cap assembly)를 멕시코로 수입
  2. 멕시코에서 조립(assembly) 공정을 거쳐 전동모터를 생산
  3. 최종 완제품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CBP 『19 C.F.R. § 134.1(b)』에 따르면, NAFTA(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CBP 『19 C.F.R. § 102』에 정의된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19 C.F.R. § 134.1(b)**

“Country of origin” means the country of manufacture, production, or growth of any article of foreign origin entering the United States. Further work or material added to an article in another country must effect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nder such other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t; **however, for a good of a NAFTA or USMCA country, the marking rules set forth in part 102 of this chap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 102 Rules) will determine the country of origin.**

- CBP 『19 C.F.R. § 102.11(a)』에 따르면, NAFTA(혹은 USMCA)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에 따라 결정함
  - (1)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3)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Part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 전동 모터의 경우,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어 (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CBP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8501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판정 결과

- ☑ 외국산 재료의 HS Code(제8503호)와 완성품의 HS Code(제8501호)가 4단위 기준에서 상이하므로 멕시코산으로 판정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USTR은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중국산 특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제301조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사용
  - 실질적 변형: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조립(assembly) 공정이 행해진 경우, 수입된 부품들이 물리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질(character)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관련 판정 및 분석

- 원재료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도(use)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226, 542 F. Supp. 1026,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조립과 관련하여 단순 조립인지 또는 보다 복잡한 조립인지 여부를 평가하며, 개별 부품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는지를 검토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판정 결과

- ☐ 중국산 부품들은 이미 사전에 용도가 결정되어 있었으며, 멕시코에서의 조립 공정은 중국산 3개 하위 어셈블리들을 큰 복잡성 없이 단순 조립(simple assembly) 한 것에 해당함
  - 그러므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용도의 변화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조립(simple assembly)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 결론

- ✓ NAFTA(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멕시코산으로 판정함.
- ✓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단순 조립인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산으로 판정(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Ⅲ 시사점

- CBP Ruling HQ H301619는 2018년 7월 25일 NY N299096을 수정한 것으로, 대중 무역제재 조치인 제301조가 시행된 2018년 7월 6일 이후, 제301조 적용을 위한 CBP의 원산지판정 기준이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사례임
- ① NY N299096에서 CBP는 원산지표시 및 제301조 적용을 위해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인 CBP 『19 C.F.R. § 102.11(d) 및 102.14(o)』에 근거하여 전동 모터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것으로 판정함
- ② 이후, HQ H301619를 통해 원산지표시는 NAFT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 『19 C.F.R. § 102.11(a) 및 102.20』에 의해 멕시코산으로 기재해야 하며, 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중국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 비원산지재료를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조립 공정의 복잡성 및 원재료와 최종 제품 사이의 명칭, 성질, 용도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1619 (2018.11.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1619>
- CBP Ruling NY N299096 (2028.07.25.), <https://rulings.cbp.gov/ruling/N299096>
- CBP 19 C.F.R. § 120,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4

## Top Mount Assembly

### 요약

사례명	<b>Top Mount Assembly</b> 원산지표시
사례번호	NY N340493 (2024.07.01.)
사실관계	한국에서 중국산 PS 베어링과 한국산 인슐레이터를 조립(press-fitting)하여 완성된 Top Mount Assembly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b>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여부</b> 자동차 서스펜션 부품에 사용되는 중국산 PS 베어링과 한국산 인슐레이터는 각각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수행한 공정(인슐레이터에 PS베어링을 fitting한 공정)은 단순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인슐레이터) 및 중국(PS베어링)으로 표시해야 함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2)</sup>

**사 례 명** [Top Mount Assembly] 원산지표시

**사례번호** NY N340493 (2024.07.01.)

**사실관계**

<b>요청자</b>	Onestop Customs Corporation	
<b>제품명</b>	• Top Mount Assembly	
<b>제품</b>	<b>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S 베어링(Plain Sliding Bearing) (중국산)</li> <li>• 인슐레이터(Insulator Assembly) (한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인 플레이트, 베어링 플레이트, 고무, 상부 컵, 하부 컵, 볼트 3개로 구성</li> </ul> </li> </ul>
	<b>용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차체와 Suspension Strut 상단을 연결하는 역할</li> <li>• 서스펜션 회전 시 원활한 움직임을 지원하는 PS 베어링 포함</li> </ul>

**제조공정**



- 상세공정**
1. 메인 플레이트와 베어링 플레이트를 고무 사출(Injection) 방식으로 고정
  2. 상단 컵 및 하부 컵 용접
  3. 볼트를 삽입하여 인슐레이터 완성
  4. 프레스 장비를 사용하여 중국산 PS 베어링을 인슐레이터에 삽입(press-fitting)
  5. 조립 후 미국 수출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은 CBP 『19 C.F.R. § 134』에 따라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정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 실질적 변형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 제조 또는 조립 과정이 단순한 공정(minor process)으로서 원재료가 공정 후에도 본질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내용** 신발 갑피를 밑창에 부착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갑피는 완성된 신발의 본질적 요소(the very essence of the completed shoe)라고 판시함

## 판정 결과

☐ CBP는 중국산 PS 베어링을 인슐레이터에 프레스 장비로 삽입하는 과정이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고 판단. 또한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PS 베어링과 인슐레이터가 각각 완전히 다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부품이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으로 나누어 구분해야 한다고 판정함

\* Strut Mounts 판매 기업인 KYB의 홈페이지 제품 소개 내용<sup>3)</sup>을 참고하여 PS 베어링과 인슐레이터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토

## 기타 의견

☐ 요청자는 제301조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으나, PS 베어링의 원산지가 중국이므로 무역법 제301조 적용 대상에 해당함

☐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과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 결론

- ✓ 최종제품은 한국(인슐레이터)과 중국(PS 베어링)이 각각 원산지 표시되어야 하며, 중국산 PS 베어링의 경우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임

3) KYB, [https://www.kyb.com/resources/shock-strut-basics/all-about-strut-mounts/#:~:text=As%20the%20name%20\(strut%20mount,mount%20is%20like%20a%20sandwich.](https://www.kyb.com/resources/shock-strut-basics/all-about-strut-mounts/#:~:text=As%20the%20name%20(strut%20mount,mount%20is%20like%20a%20sandwich.)

## II 시사점

- 최종 제품과 관련하여, 단순한 프레스 조립(press-fitting) 과정만으로는 부품이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될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완제품의 구성 부품들이 가공 후에도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완제품에 복수의 원산지가 부여될 수 있음

##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Ruling NY N340493 (2024.07.01.), <https://rulings.cbp.gov/ruling/N34049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5

스프레이 용기 (제8424.89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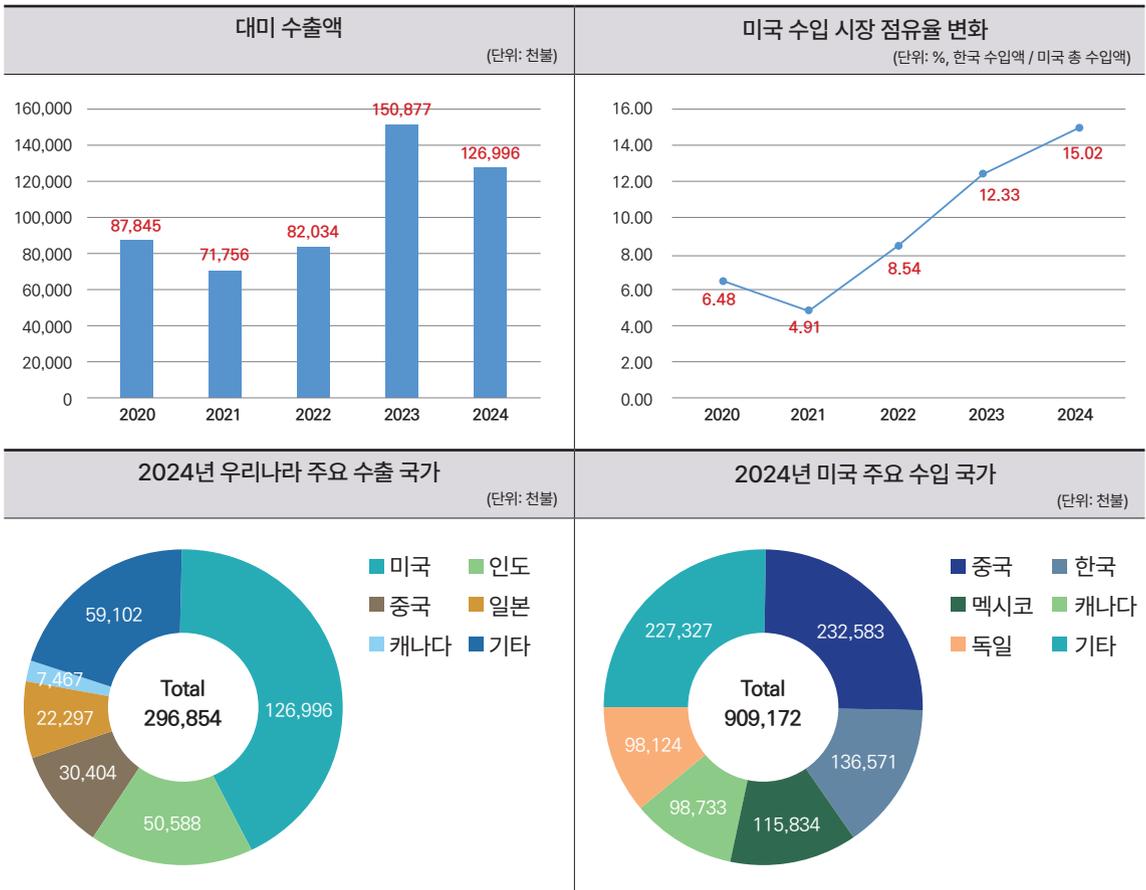
사례명	스프레이 용기 한-미 FTA 적용 및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44861 (2025.01.14.)
사실관계	중국에서 생산된 튜브형 슬리브를 한국에서 한국산 버튼, 캡, 펌프 등과 함께 조립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 튜브형 슬리브의 HS Code(제39류)가 완제품의 HS Code(제8424.89호)와 상이하므로 특혜관세대우 적용 가능</p> <p>② 실질적 변형 여부 기본적으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용기에 필수 구성요소인 펌프와 버튼이 결합됨으로써 스프레이 용기로 변형되었으므로, 개별 부품들이 상업적으로 명칭·성질·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p>
근거법령	- HTSUS(19 U.S.C § 1202) General Note(GN) 33(o)/chapter 84/5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24.8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 1.8%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8424.8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사례명** [스프레이 용기] 한-미 FTA 적용 및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44861 (2025.01.14.)

### 사실관계

요청자	Union Customs Brokerage Office	
제품	제품명	• 화장품용 진공 펌프(스프레이) 용기(모델 번호 KANG0017S)
	구성	• 튜브형 슬리브(중국산) • 버튼, 스냅온 캡, 오버캡, 펌프(한국산)
	용도	• 화장품(크림, 로션 등)을 분사/배출하는 용도
	원재료 HS Code	• 튜브형 슬리브(제39류)
	완제품 HS Code	• 화장품용 진공 펌프(스프레이) 용기(제8424.89호)

### 제조과정



### 상세과정

1. 한국산 resin 중국으로 수출
2. 중국에서 슬리브 본체 압출, 코팅 및 도장
3. 튜브형 슬리브 한국으로 수출
4. 한국에서 튜브형 슬리브에 버튼, 펌프, 캡 등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완성
5.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제8424.8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84/54』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10호 내지 제8430.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판정 결과

- ☑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 튜브형 슬리브의 HS Code(제39류)가 완제품의 HS Code (제8424.89호)와 상이하므로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적용이 가능함

2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제품의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총체적 상황(totality of the evidence)에 근거하여 결정

❖ 참고 판례: 1.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2.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판정 결과

- ☑ 기본적으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용기에 필수 구성요소인 펌프와 버튼이 결합됨으로써 스프레이 용기로 변형되었으므로, 개별 부품들이 상업적으로 명칭·성질·용도 면에서 구별되는 새로운 물품으로 변화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 진공펌프 용기의 조립 공정은 매우 간단하지만 개별 품목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형을 인정함

결론

- ✓ 화장품용 진공 펌프 용기는 한-미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미국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이 가능함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의한 비특혜원산지기준에 따라서도 한국산으로 판정 가능함

### Ⅲ 시사점

-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수행된 공정이 단순하더라도, 해당 공정으로 인해 원재료와 최종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가 상업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제301조, 제232조, 미국 정부 조달 물품의 원산지판정 등 여러 무역정책 실행을 위해 실질적 변형 기준이 활용되고 있는 바, 사전에 CBP 사전판정 신청을 통해 수출 물품이 실질적 변형 기준에 의해 한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4861 (2025.01.14.), <https://rulings.cbp.gov/ruling/N34486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HTSUS(19 U.S.C § 1202) General Note(GN) 33(o)/chapter 84/54, <https://hts.usitc.gov/>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 파이프 렌치

### 요약

사례명	<b>파이프 렌치</b>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사실관계	<b>공통사항</b> 한국 및 중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을 중국에서 추가 가공 및 조립하여 미국에 수출	
	<b>① NY N332258</b> <b>한국</b> • 손잡이, 조절 조 생산 후 중국 수출 <b>중국</b> •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 미국으로 수출	<b>② NY N332515</b> <b>한국</b>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 생산 후 중국 수출 <b>중국</b> •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 • 상기 4개 부품과 기타 부품 결합 조립 •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b>공통사항</b>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조절 너트는 기능적 측면에서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임	
	<b>① NY N332258 실질적 변형 여부</b> 한국산 부품의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으나 완성품 상태는 아니었고, 중국에서 추가적 가공과 다른 핵심 부품의 결합을 통해 완성품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중국산)	<b>② NY N332515 실질적 변형 여부</b>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들이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었고, 해당 부품들은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한국산)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I 판정사례<sup>4)</sup>

### 사 례 명 [파이프 렌치]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32258 (2023.04.21.) 및 NY N332515 (2023.05.08.)

#### 사실관계

요청자	Weihai Maxpower Advanced Tool Co., Ltd.	
제품명	• 파이프 렌치 (Pipe Wrench)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잡이 / 조절 조 / 고정 조 / 조절 너트 / 핀, 스프링 등</li> <li>• 톱니가 있는 두 개의 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절 너트를 이용해 파이프에 밀착하여 고정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됨</li> </ul>	
용도	• 배관 부품의 조립 또는 해체 시 도구로 사용	

#### 제조과정 (① NY N332258)



#### 상세공정

<p>한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로 손잡이 생산</li> <li>2.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조절 조 생산</li> <li>3. 손잡이 및 조절 조 중국으로 수출</li> </ol>
<p>중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고정 조 생산</li> <li>5. 중국산 강철튜브를 가공하여 조절 너트 생산</li> <li>6.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밀링, 열처리, 드릴링, 코팅)</li> <li>7. 중국산 핀, 스프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li> <li>8. 작동 테스트 및 포장 후 미국 수출</li> </ol>

4)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제조과정 (© NY N332515)



상세과정

- |   |  |
|---|--|
| <br>한국 | 1. 한국산 알루미늄 원재료로 손잡이 생산<br>2. 중국산 강철봉을 가공하여 조절 조 및 고정 조 생산<br>3. 중국산 강철튜브를 가공하여 조절 너트 생산<br>4.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및 조절 너트 중국으로 수출 |
| <br>중국 | 5.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추가 가공(밀링, 열처리, 드릴링, 코팅)<br>6. 중국산 핀, 스프링 등과 함께 최종 조립<br>7. 작동 테스트 및 포장 후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실질적 변형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명칭(Name), 성질(Character), 또는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 실질적 변형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해야 한다고 명시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립 작업이 단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관련 법령 및 분석

### NY N332258 판정 결과

- ☑ 파이프 렌치는 크게 손잡이, 고정 조, 조절 조, 조절 너트로 구성되며, 고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절 너트를 조작하여 두 개의 조를 조여야 하므로 기능적 측면에서 상기 부품들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생산된 손잡이와 조절 조가 파이프 렌치에 사용될 용도로 제작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파이프 렌치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 대략적인 형태만 갖춘 손잡이와 조절 조가 중국으로 운송되어 추가 가공 후, 중국산 고정 조, 조절 너트, 기타 부품과 조립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중국산이라고 판정함

### NY N332515 판정 결과

- ☑ 한국에서 생산된 손잡이, 조절 조, 고정 조 및 조절 너트는 파이프 렌치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품들임
- ☑ 해당 부품들은 한국에서 파이프 렌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산지는 한국이라고 판정함

## 결론

- ✓ ㉠ (NY N332258 사례)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중국임
- ✓ ㉡ (NY N332515 사례) 파이프 렌치의 원산지는 한국임

## Ⅲ 시사점

- 공구류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여러 부품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모든 부품들이 동등하게 중요할 경우, 각각의 부품이 생산된 국가, 기능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다만, CBP는 동일 물품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상이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2258 (2023.04.21.), <https://rulings.cbp.gov/ruling/N332258>
- CBP Ruling NY N332515 (2023.05.08.), <https://rulings.cbp.gov/ruling/N332515>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ORIGIN CASE

Vol. 1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